

보도시점 2026. 3. 20.(금) 조간 < 2026. 3. 19.(목) 15:00 >

‘상생결제’, 이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최초 도입으로 이용기업의 편의성 제고 -
- 새롭게 구축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이용기관 간 상생결제 업무협약식에서 상생결제 확산 방안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3.19일(목) 서울 KB증권 본사에서 상생결제 이용기관들로부터 상생결제 제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 상생결제 이용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3. 19.(목), 15:00 ~
- 장소 : 서울 KB증권 대회의실(22층)
- 참석자 : 중기부 제2차관, KB증권 대표이사, (주)두산 부사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직무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주)결제전산원 대표 등
- 주요내용 : 원스톱 상생결제플랫폼 소개, 업무협약(KB증권·두산·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 이용기관 현장 간담회 등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따른 상생결제 확산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구매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KB증권, (주)두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증권사 최초로 KB증권이 상생결제 협약금융기관*에 참여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주)두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상생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존)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농협, 제일, 경남, IM뱅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캐피탈 등 13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부터 하위 협력사가 동일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했던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타 은행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상생결제 플랫폼이다.

- * (개선전) : 구매기업(A은행) - 1차협력사(A은행) - ... N차협력사(A은행)
- * (개선후) : 구매기업(KB증권) - 1차협력사(B은행) - ... N차협력사(C은행)
- ※ 협력사는 신규 계좌 개설 필요 없이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수취 가능

이를 통해, ①상생결제 사용을 위해 1차 이하 협력사가 계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없고, ②모든 상생 결제 관련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하게 되어 이용기업의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결제방식으로,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2015년 상생결제 제도시행 이후 연간 운용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 189조원을 달성하였다.

* 연도별 실적(조원) : (‘15) 24.6 → (‘18)107.4 → (‘23) 171.8 → (‘24) 180.3 → (‘25) 189.1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상생결제 이용기관으로부터 향후 민간(대기업 등)과 공공(공공기관) 부문에서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권 제2차관은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의 핵심과제로서 상생결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상생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책임자	과 장 정의경 (044-204-7930)
		담당자	사무관 박강범 (044-204-7934)
<협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책임자	부 장 김범식 (02-368-8777)
		담당자	차 장 김서이 (02-368-8751)

참고 1 상생결제제도 개요

□ (개요) 납품기업이 대금 지급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지급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원청)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가능한 제도('15년~)

* (근거 법률)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의2, 제22조제5항, 제27조제5항·제6항

< 상생결제 장점 및 우수성 >

구 분	내 용
유동성	■ 대금결제일(60일내) 지급되는 현금보다 빠른 자금유동화 ■ 저금리(원청 신용도 활용) 조기 현금화 ■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가능
연쇄부도 방지	■ 납품기업은 팩토링 방식으로 할인하여, 원청의 부도에도 은행은 할인 받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 방지
경비절감	■ 법인세(소득세) 공제(최대 10%)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면제 → 예산절감
시장성	■ 19만여개 기업이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14개 금융기관에서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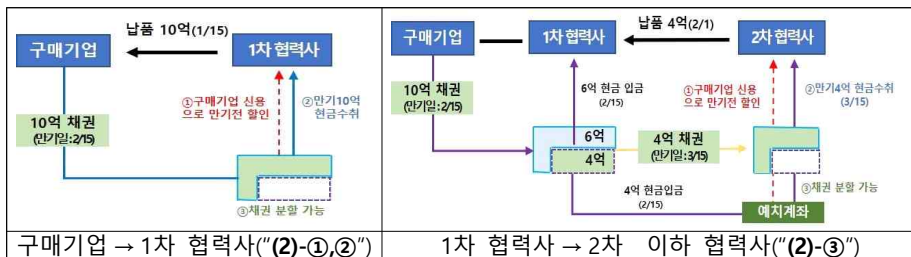
□ (상생결제 진행절차) 상품가입 후 3가지 방식으로 수취·활용

(1) 구매기업·협력사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상품 가입

(2) 상생결제 수취·활용 ※ 3가지 중 선택 가능

- ① (조기현금화) 만기일 전에 구매기업 신용으로 할인하여 현금화
- ② (만기 현금수취) 만기일까지 기다려 본인계좌로 현금 입금
- ③ (분할지급) 만기일 전에 2차 협력사 결제 요청시, 수취한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를 분할하여 지급(분할한 채권만기일 재설정)

< 상생결제 흐름도 >



□ (운용) 제도 도입('15.4-) 이후 상생결제 지급액 누적 1,377조 9,375억원('25)

* 연도별 총액(조원): ('15) 24.6 → ('18) 107.4 → ('21) 142.8 → ('24) 180.3 → ('25) 189.1

참고 2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 주요 내용

□ (개선 1) 1차이하 협력사 계좌 개설 번거로움 해소

- (현행) 1차이하 협력사는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계좌 개설 필요
- (개선) 1차이하 협력사는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로 KB증권과 약정 가능

* (기존) : 구매기업(A은행) - 1차협력사(A은행) - ... N차협력사(A은행)
 * (개선) : 구매기업(KB증권) - 1차협력사(B은행) - ... N차협력사(C은행)
 ※ 협력사는 신규 계좌 개설 필요 없이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수취 가능

□ (개선 2) 모든 상생결제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

- (현행) 13개 금융기관의 영업점·인터넷뱅킹·상생결제 업무(MP)사이트 등 총 39개 채널에서 약정, 발행 등의 업무를 분산 처리
- (개선) 13개 금융기관은 기존대로 운영, 14번째 금융기관(KB증권)부터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이지싱크)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처리

* (기존) 은행별 영업점·인터넷뱅킹·MP사이트에서 상생결제 업무를 나누어 처리
 * (개선) 원스톱 플랫폼에서 모든 상생결제 업무 처리 가능. 현재는 KB증권만 제휴되어 있으나, 기존 13개 금융기관도 추가 제휴로 사용 가능

□ (개선 3) 새로운 UI/UX 개편으로 수요자 편의성 제고

- (현행) 기존 업무(MP)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 제공에 한계
- (개선) 이용자(협력사 등) 경험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이지싱크) 구축

* (기존)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화면과 서비스가 미흡
 * (개선) 처음 이용하는 협력사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화면 및 서비스를 구성